



## 동산담보관리와 정보화 제고의 필요성

박 현 일\*

### | 국문 요약 |

현재 중소기업들이 동산담보법에 의하여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신청 건의 태반이 특정 불가,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되고 있으며, 담보물의 무단 반출·도난 방지 등에 드는 비용의 증가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동산담보등기를 마친 채권은행이라 할지라도 일반채권자가 동산담보물에 대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를 통보 받을 수 없기에 자칫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기계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가격비교, 공정한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

거래에 수반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통 등기·등록, 상장법인의 公正公示,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SWOT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이 행해진다. 동산담보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산담보물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위의 방안을 참고하여 정보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등기의 이점을 살려 동산담보물의 DB를 은행권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산담보 DB가 구축되면 담보물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이중담보제공이나 핵심부품 빼돌리기도 줄어든 것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 DB를 가지고 온라인 거래소를 설치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B구축과 연계된 RFID, NFC 기술을 기업 실정에 맞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은행들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므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NFC 같은 적정기술(AT)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동산담보관리가 공공성을 띠면 공공부문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의 인프라로서 전자식별표를 이용한 담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가 담보물을 셀프-체크하고, 동산담보관리 전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수 있다.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DB구축이 지연될 경우 향후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제도화, 정보의 비용, 동산담보, 전자식별표, 전자등기, 공시방법, SWOT 분석, 비용·편익분석.

< 차 례 >

- I. 문제의 소재
- II. 분석의 틀
- III. 사례 연구
- IV. 정보화 수준의 제고방안
- V. 동산담보관리의 경우
- VI. 실효성 있는 방안의 모색

## I. 문제의 소재

중소기업이 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그해 8월에 출시되었는데, 이 법의 시행이 1년여 경과하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러나 사업 현장에서는 동산, 매출채권 등의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대출이 집행되더라도 동산담보 현황조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 법학박사.

(투고일자: 2013.11.08, 심사일자: 2013.11.30, 게재확정일자: 2013.12.11.)

- 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2012년 8월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1년 동안 2,457개 업체에 6,27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대출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5월부터는 여신대상자 범위, 상품별 대출한도, 담보인정비용 등을 완화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금감원 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2013.8.26.
- 2) 동산담보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를 위해 은행과 차주가 협의하여 전자식별표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관련 시설을 갖추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당시만 해도 기대를 모았던 동산담보관리 기법이 이용되지 못하고 신용대출이나 다름없이 실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의 틀(analytical framework)을 고안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슨 변수(parameter)가 작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동산담보관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중소기업이나 대출은행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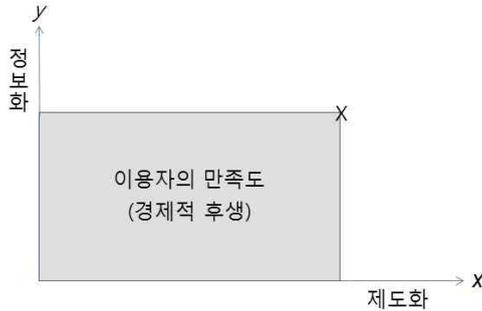
## II. 분석의 틀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안, 예컨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용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찾는 이가 많은 민원창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창구는 2개에 불과한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 몰려들었다고 하자. 사람들이 창구 앞에 줄을 서게 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졌다면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민원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줄에 복잡한 사안을 가진 민원인이 있다면 그 뒤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 나오고 일부는 옆줄로 옮겨가기도 할 것이다.

민원인들이 아무 불평 없이 창구에 도착한 순서대로 민원을 처리하게 하려면 공항 카운터 앞에서 보듯이 줄을 하나로 만들고 창구가 비는 대로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갈지(之)자로 줄이 생기고 서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불편이 따른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번호표를 발급하여 자유롭게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차례로 호출을 하고 지정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원창구 앞에는 자동 번호표 발급기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질서 있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구 앞도 혼란스럽지 않고 민원인들의 불만도 줄게 마련이다. 여기서 민원처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규칙을 만들어 제도화<sup>3)</sup>하는 것이고, 번호표를 받는 것은 자기 차례가 언제쯤일지 정보(information)를 획득하는 것이다.

3) 여기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하나의 규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누구나 이를 원칙으로 여기는 단계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림 1〉 제도화와 정보화의 관계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로(x)축은 제도화의 정도이고, 세로(y)축은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가졌는지 정보화의 수준을 보여준다.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cost)<sup>4)</sup>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래프 상의 점이 가로축 및 세로축과 만나는 선이 만드는 면적은 이용자의 만족도나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의 크기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이용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그 면적이 커지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경제학의 개척자’라 일컬어지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포스너(Richard Posner) 판사<sup>5)</sup>는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자나 기록전달수단이 없었던 원시사회에서는 정보수집의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수사·언론 같은 제도가 없었음에도 심각한 범죄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원시사회 구성원들이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대가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정보화의 수준이 높아 각자 제보자, 수사관이 되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6)</sup>

한편 정보화는 (-)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거짓 정보나 불법 수집된 정보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sup>7)</sup>가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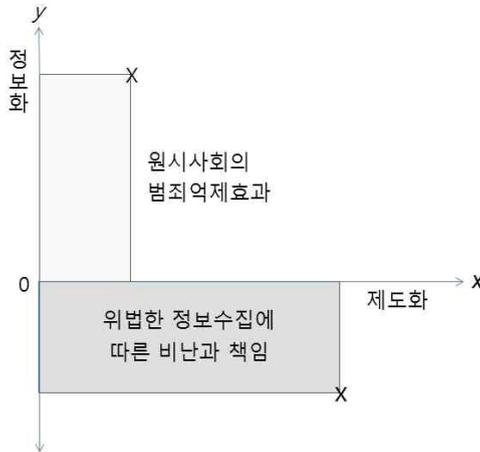
4)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이란 경제학상으로는 투자 또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實査활동(due diligence investigation)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지만, 본 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5) 정기화, “알기 쉬운 법경제학 강의”, 신동아, 2003년 7월호 <<http://blog.daum.net/ssok1/3329>>

6)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s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 148.

이러한 경우는 ‘마이너스의 정보화’라 할 수 있고 이것을 각각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회구성원들의 만족도는 <그림 2>와 같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2> 원시사회와 현대의 정보수집의 효과



### III. 사례 연구

위와 같은 분석의 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과연 타당한 가설인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 7) 2013년 6월 미국의 정보요원 스노우든은 언론을 통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PRISM이라는 도·감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펴왔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미 정부가 제도화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난처한 지경에 빠진 사례가 될 것이다.

## 1. 현금영수증 제도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일부 상인은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가격을 깎아 주기도 하는데 상거래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경우 국세청의 稅收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금거래 비중이 클수록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규모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만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혜택을 부여하였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넓히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업소에서 신용카드처럼 생긴 현금영수증 카드를 단말기에 읽히면 그 즉시 국세청에 매출액이 통보되어 해당 업소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가 없더라도 소지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현금영수증은 이용자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는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의 입력만으로도 현금결제를 인정해줌으로써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세한 거래내역과 금액 등 (+)정보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신용평가 제도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평가를 받게 된다. 信用評價(credit rating)란 발행자의 특정 유가증권에 관한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 또는 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을 A, B, C 등의 신용등급 기호(symbol)로 표시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sup>8)</sup> 신용평가기

8)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3은 “신용평가업”을 (i) 금융투자상품, (ii)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iii) 국가, (iv) 지방자치단체, (v)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iv)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관(credit rating agency: CRA)의 역할은 ‘신용평가를 통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에 대한 자본시장의 수요(needs)가 커지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발달하였다.<sup>9)</sup>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발행자는 기간과 금리 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따라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CRA)을 필요로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장기간의 다양한 자산 및 기업에 대한 평가경험을 통해 신용평가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발행자로서도 신용평가를 받아 용이하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한 신용평가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증권시장 및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도 유가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 및 관련 분석정보가 시장에 유포됨으로써 자본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별 증권의 신용등급 동향을 파악하여 재무적 건전성을 감시하는 데 유용한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 프리미엄을 차등화함으로써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발행조건이 결정되게 하고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sup>10)</sup>

그러나 2007년 말 신용평가회사들이 좋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던 모기지 대출

9) 신용평가는 1900년에 설립된 무디스(Moody's)가 1909년 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 효시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하여 채권의 평가등급이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로 인정받게 되자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 S&P)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반면 은행을 매개로 한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주도로 자본시장의 육성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신용평가회사를 설립·운영하였다. 1983년 12월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였던 한국경영컨설팅(주)가 신용평가업무를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박원일,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규제현황 및 향후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12, 6면 이하.

10) 위의 보고서, 49면.

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MBS와 CDO 등 구조화상품<sup>11)</sup>이 대거 부실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산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 부동산경기의 활황에 따른 모기지 대출의 즉시 유통화 붐,<sup>12)</sup> ▷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확대, ▷ 유통화를 통한 자산의 리패키징, ▷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등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위험의 이전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까닭이다.<sup>13)</sup> 이와 같이 유통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주택경기가 둔화되자 기초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고, MBS 등의 유통화증권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이전되었던 신용위험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던 것이다. 특히 유통화 매개체인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에 대한 신용보강기관의 부실화로 충격이 크게 증폭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는 일반화되었으나 신용평가회사들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좋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던 구조화상품이 대거 부실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매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주요국의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구조화상품 등의 신용평가에 관한 상세한 정보(신용평가방법론, 신용평가서의 내역 등)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sup>14)</sup>

11) MBS는 모기지대출을 담보로 한 유통화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말하고 CDO는 MBS 등 부채를 담보로 한 유통화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이다. MBS나 CDO는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만들어 신용도 높은 증권을 발행하는 전형적인 구조화상품들(structured products)이다. 미국의 부동산경기가 퇴조를 보이자 신용평가회사들이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림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12) 은행들이 유통화할 대상자산을 만들기 위해 신용미달자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originate and distribute: O&D) 예가 허다하였다.

13) 김필규,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 자산유동화법 개정 공청회 발표자료, 2010.8.19.

14)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을 제정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회계사의 감사보고와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악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평가대상 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게을리 하거나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여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박준,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상사판례연구 제24집 3권(2011.9.30.) 81~82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의 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는 그 기재사항 등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한 기재누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

앞서 말한 분석의 틀로 본다면 제도화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정보화의 수준은 구조화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이 나올수록 무지(無知)에 가깝게 떨어졌던 것이다.

### 3. 탄소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란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또는 국가 간에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성분이 탄소이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한다.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등을 감축한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 CER)을 받게 된다. 관련 당사국은 1990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하며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국가나 기업은 할당된 탄소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허용량이 남으면 그 만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32개국 정도이다. 일본, 미국은 국가가 아닌 주 또는 지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거래소를 설립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sup>15)</sup>

---

성이 있다. 나아가 법 제335조의11에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으로서 신용평가방법론을 명시한 이상 이를 어겼을 때에는 당연히 위법성을 띠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상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은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정보”에 관한 것이고, 신용평가서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의견”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같은 논문, 75면.

15)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으며, 2012년 말에 유엔에서 최종 승인이 났다.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은 시설물은 모두 6곳으로 예성강 수력발전소 3, 4, 5호기,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공장가동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발생이 크게 줄었고,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늘어나 수요를 압도하다보니 배출권 가격이나 거래규모가 급감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미리 배출권을 많이 할당해 놓은 것도 문제여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16)</sup>

환경보호의 가치를 내건 EU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애쓰고 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2012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개혁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인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의 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30%로 높이고, 2013~2020년 중 기업에 새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배출허용량을 없애는 한편 회원국별로 배정되는 허용량 상한선을 매년 조금씩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최근 유럽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 제안을 부결하였음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혁 방안을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붕괴를 결코 방치하지 않고 장기 감축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배출권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유럽은 화석연료를 능가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대부분의 청정 전력원은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했다. 청정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말한 분석의 틀을 적용해보면 EU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제도는 완전히 정착되었음에도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일단 청정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된다는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고가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수준이 낮은 결과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

주로 수력발전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인정받아 앞으로 연간 2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 16) 탄소배출권 가격은 한때 톤당 30유로, 미화로 약 4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톤당 3유로, 미화 4달러까지 떨어졌다.

## IV. 정보화 수준의 제고 방안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제도화와 정보화라는 변수를 이용한 분석의 틀은 현상과 문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제도화는 법령·규칙이 잘 정비되고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지면 개선될 수 있지만 정보화는 보조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 건설기계(重機), 자동차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등기·등록 제도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한 公正公示(fair disclosure: FD) 제도, 유가증권의 상환가능성 등 신용상태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신용평가 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편익을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SWOT 분석, 비용·편익 분석(benefit cost analysis: BCA) 등의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 1. 등기·등록제도

등기(registration)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 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sup>17)</sup>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계약)와 함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17) 부동산거래 시 계약체결 직전의 등기열람은 필수적이다. 준공 전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종로 피맛골에 신축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주상복합빌딩의 수분양자들은 건설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소유권은커녕 분양대금을 모두 매일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들은 건설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당해 부동산의 수탁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과 입금계좌를 종이로 가린 계약서를 내놓아 계약서 변경사항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당해 건물의 준공 전이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건설회사 사주가 악용한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까닭에 권리도 잃고 분양대금도 빼이고 말았다. MBC PD수첩 “회장님, 570억을 돌려주세요”, 2013.11.5.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관이 서류심사만 하고 등기를 해주므로 등기에 공신력(公信力)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을 지라도 등기된 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을 경우 거래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부동산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고 등기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199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중요한 재산이고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에 대하여도 각각 등록<sup>18)</sup>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선박법 8조, 건설기계관리법 3조, 자동차관리법 5조).

동산에 관하여는 동산담보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sup>19)</sup>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동산담보법 1조, 3조). 동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부<sup>20)</sup>를 열람함으로써 거래하려는 특정 동산에 관한 권리내용과 물건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18) 등기와 등록은 법률에 의한 것이고 법적인 효과도 비슷하지만 전자는 법원 등기소에 하고, 후자는 행정관청에 하는 차이가 있다.

19) 동산담보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산담보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으므로 법원이 관리하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 동산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 별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人的 편성주의)해 놓은 것이므로 전자적 방식으로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다.

21)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동산담보법 제6조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매에 부쳐진 동산이 담보등기가 되어 있는지 경매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상실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2. 기업내용 공시제도

기업내용 공시(disclosure)란 협의로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에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신속·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유가증권 발행회사, 상장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119조 이하, 149조, 159조, 163조 등).

광의로는 기업의 공공성 견지에서 기업의 경제적 업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래 주주나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주주(shareholders) 이외의 소비자·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기업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로 자본시장법 외에도 법인세법, 상법 등이 있으며, 상법에서는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작성공고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447조의2, 448조, 449조).

금융감독원은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이 기업가치, 배당가능이익, 담보력 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장법인, 유가증권 발행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공시(DART) 시스템<sup>22)</sup>을 운영하고 있다.

## 3. SWOT 분석

다음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어느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4분면(matrix) 표를 만들어 분석하는 SWOT 기법이 있다. 이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을 열거하고 서로 비교衡量하여 판단을 하는 분석 도구이다. 사업시행자의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약점 분석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위협요인 분석으로 나뉜다. 강점과 기회는 성공의 측면을 예상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약점과 위협은 실패요인을 점검하는 것이다.

SWOT 분석은 어떤 문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역량이나 동원가능한 자원은 같을지라도 목표를 해외 진출에 두느냐, 내수시장 개척으로 하느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단 목

22)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http://dart.fss.or.kr>>.

표가 정해지면 자신의 실력과 외부 환경요인을 잘 살펴야 한다. 언론보도, 개인 정보망 등을 총동원하여 수집·조사한 내용을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열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화살표로 연결하다 보면 강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험은 피하는 식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매트릭스를 서로 연결하면 SO(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림), ST(강점은 유지하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함), WO(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림), WT(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함)로 나누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SWOT 분석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강점이나 약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기회, 위협요인을 헤아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SWOT 분석의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사업의 목적 내지 문제점을 정의하고 SWOT 요소를 분석하는 가운데 답을 얻는 경우도 많다.

#### 4. 비용·편익 분석

계획사업에 따른 비용지출, 현금흐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용·편익 분석(BCA)이 매우 유용하다.<sup>23)</sup> 여러 종류의 비용·편익 분석기법 중에서 순현재가,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 분석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때 분석 대상 기간, 할인율 등에 대한 가정이 불가피하므로 시장이자율이나 생산성, 경제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기도 한다.<sup>24)</sup>

순현재가(net present value: NPV) 분석<sup>25)</sup>의 결과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수익률

23) 이 방법은 1936년 미국 홍수방지법(Flood Control Act)의 개념을 미국 공병단이 처음 적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1950년 미국에서 BCA 지침서인 그린북이 간행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그 경제성분석에 사용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전세계적으로 수자원, 항만, 철도, 도시재개발 사업 등 공공투자계획을 수립·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http://203.250.99.31/pub/docu/kr/AN/AA/ANAA2002015/ANAA-2002-015-019F.HTM>>.

24) 비용·편익 분석법은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필수적이다. 예컨대 지리정보(GIS)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부사업에 있어서도 GIS 활용체계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평가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기운 외, GIS 활용체계의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국가GIS지원연구 2003-62(건설교통부 용역보고서), 2003, [요약] 8-9면.

이 경제적으로 우수하므로 사업을 승인하고 음의 값을 가질 경우는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포기해야 한다. 순현재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편익의 가치를 할인해 주어야 하므로 어떤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용편익비율(B/C ratio) 계산방법<sup>26)</sup>은 투자사업기간 동안 총수익의 현재가치와 총비용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구하며 비용편익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나타내며, 사업이 다른 경우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venue: IRR)은 미래의 현금유입의 현재와 현금유출의 현재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로 표시되는 바,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기법을 모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세 가지 기법 모두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이 연관되어 있으며<sup>27)</sup> 순현재가와 비용편익비율의 경우 유사한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25)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NPV = \sum_{i=0}^n \frac{NB_i}{(1+r)^i} + \frac{S_n}{(1+r)^n}$$

여기서  $NB_i$  : 기간  $i$  에서의 순가흐름;  $n$  : 흐름의 최종기간;  $S_n$  : 잔존가치 또는 최종가;  $r$  : 할인율을 말한다.

26)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B/C = \sum_{i=1}^n \frac{B_i}{(1+r)^i} / \sum_{i=1}^n \frac{C_i}{(1+r)^i}$$

여기서  $B_i$  : 기간  $i$  에서의 편익;  $C_i$  : 기간  $i$  에서의 비용;  $n$  : 흐름의 최종기간;  $r$  : 할인율을 말한다.

27) BCA 분석결과가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사례는 2006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영국의 스텐 재무장관이 주도하여 작성한 「기후변화의 경제학」(Stern Review on Economics of Climate Change)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당장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이 매년 GDP의 5%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각국이 탄소세 부과 등 조치에 나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던 BCA 분석자료가 할인율 같은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보고서의 내용이나 제안에 결함이 많고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예컨대 미국 예일대 노드하우스 교수는 스텐 보고서에서 이용한 할인율의 전제가 된 자본수익률이나 소비성향이 너무 윤리적인 기준을 따랐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Nicholas Ster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William D. Nordhaus, "Critical Assumptions in the Stern Review on Climate Change", *SCIENCE* Vol.317, 13 July 2007, available online at <[http://www.econ.yale.edu/~nordhaus/homepage/nordhaus\\_stern\\_science.pdf](http://www.econ.yale.edu/~nordhaus/homepage/nordhaus_stern_science.pdf)>.

## V. 동산담보관리의 경우

### 1. 동산담보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문제점

동산담보관리의 경우 중소기업 등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동산을 전자등기를 한 후 담보로 제공하는 법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정보화를 위하여 동산담보물을 공시하는 전자등기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거래당사자들이 담보동산의 실제 여부, 권리관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가 상당 부분 갖추어진 셈이다. 그러나 대출은행들의 동산담보 취득·관리 및 처분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보화의 실익을 거의 누릴 수 없고 종종 그 허점이 노정되는 실정이다.

한국법학원이 동산담보법 시행 1년을 맞아 2013년 5월 하순에 개최한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심포지엄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은행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28)</sup>

첫째, 동산담보관리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무단반출·도난 방지 등 담보물의 가치유지 비용 등 동산담보제도의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기계류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경우 믿을 만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 다양한 제품의 비교구매, 매매물건 정보, 중고기계의 시장가격, 소유권 등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의 경우 브로커 거래, 음성적 거래, 입찰담합 등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신속·공정한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 은행이 자체 처리할 경우에도 공정성 및 인력의 비효율 등 리스크 제거에 필요한 중고기계 처분시장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시행되고 있는 동산담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물 관리에 있어서 개별 금융회사의 담보물건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자태그(RFID), 위치추적 통신시스템(GPS, CDMA) 기술 등을 활용하는 담보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담보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의 사양, 식별정보, 소유권, 담보설정 정보 등을 통합한 동산담

28) 이상진 기업은행 본부장, “[토론문] 금융권에서 동산·채권담보권 취급 실태 및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2013. 8), 98~100면.

보물 등록정보 DB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법원 등기소와 등기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부당거래 및 이중담보제공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용역경비업체 등 외부업체를 활용(outsourcing)하여 여러 금융기관의 담보물 현황조사·확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관리대상 담보물이 일정 물량 이상이 되면 적정비용으로 담보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산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서 상품(금리) 측면에서 이용하기 곤란하다. 담보물관리와 마찬가지로 화재 및 도난보험에 대하여도 금융권 공동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면 관련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동일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약의의 채무자가 표시방법을 달리하면 이중으로 담보등록이 가능하여 담보취득 리스크가 상존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희망하는 기계설비는 사전에 임의 등록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권 공통으로 기계 분류에 따라 표시방법을 표준화하여 통일하는 방안<sup>29)</sup>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담보물을 처분할 때 사적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가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처분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로써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을 조기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브로커 거래, 음성적 거래, 입찰담합 등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신속·공정한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은행 측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에서 토로하는 고충도 경청할 만하다. 은행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을 받으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반수가 特定 불가, 자료 미비 등 여러 요인으로 담보부적합 판정을 받고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다.<sup>30)</sup> 동산담보법에 의하면 물건의 특성에 있어 제품번호를 달리 하는 등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거나 같은 보관장소 내

29) 신용장번호 부여 방식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식별방법의 공동표준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마련하면 될 것이다.

30)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사들이 동산담보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말까지 감정평가신청을 접수한 1,681건 중에서 반려한 사례는 기계기구 48.8%, 재고자산 61.0%, 농축수산물 59.3%로 전체의 52.8%에 달했다. 김철홍,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담보평가 현황 및 향후 과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중소기업중앙회관, 2013.3.14, 35면.

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별로 특정할 수 있으면 이러한 특정방법을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sup>31)</sup> 또한 토지·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동산과는 달리 공시된 자료가 없어 거의 전적으로 평가의뢰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이용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미비 또는 신뢰성 부족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up>32)</sup>

한편 일반채권자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사실을 통지받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경매절차 종료 후 동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일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sup>33)</sup>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담보등기되어 있는 것만 믿고 담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다가는 담보물을 잃기 십상이다. 집행관 역시 경매의 대상인 동산이 동산담보등기의 목적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그렇게 할 의무도 없다.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산담보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동산담보권자에게 동산이 경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34)</sup>

## 2. 동산담보에 관한 정보화의 미비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산담보제도는 근거법이 잘 마련되어 있고 전자등기 방식이 채용되어 있으므로 정보화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1) 동산담보법 제47조 제2항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32) 김철홍, 앞의 세미나자료, 44-47면

33)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손홍수, 한국법학원 세미나 지정토론회,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2013. 8), 92-93면.

34) 법원행정처의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 현장에 경매진행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동산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간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문호,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2013. 8), 86면.

도 동산담보물에 대한 DB 정보의 부재, 자료미비 등으로 담보대출 신청 건수의 과반수가 취급 불가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일단 동산담보물의 DB를 동산담보대출 취급부점 단위가 아니라 은행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기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에 관한 DB가 없는 경우의 문제점과 구축하였을 때의 이점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동산담보 DB가 구축된다면 담보물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중담보제공이나 리스 물건과 혼동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중소기업들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의 DB를 가지고 온라인 중고기계 거래소를 차리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sup>35)</sup>

<표 1> 동산담보 DB구축의 이점

	DB 부재 시의 문제점	DB구축의 이점
예상되는 현상  약손환 내지 선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산의 이동 시 소재파악 곤란</li> <li>• 이중담보제공 가능성</li> <li>• 리스물건과의 혼동 우려</li> <li>• 중고기계 판로의 어려움</li> <li>•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채권은행의 의구심 증대</li> <li>• 동산담보 제도발전에 악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현황 및 소재파악에 유리</li> <li>• 이중담보제공의 차단</li> <li>• 중고기계 DB를 가지고 온라인 중고기계 시장 창설</li> <li>• 해외수출도 용이하게 추진</li> <li>•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정보 생산 가능</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부재로 인한 혼란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물현황=전자등기=동산담보 DB</li> </ul>

DB구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동산담보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산담보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이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전자식별표란 無線주파수인식표(RFID)는 물론 바코드(bar code), QR 코

35) 동산담보 DB를 활용하면 빅데이터를 토대로 예컨대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중소기업의 공장가동율, 원자재수급 상황 등 고부가가치의 자료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드, NFC 등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동인식데이터수집(AIDC) 장치를 망라한다.<sup>36)</sup> 그러므로 법원 등기소에 전자등기가 되어 있는 동산담보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한다면 개개의 동산담보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물론 권리관계를 여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인이 아닌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37)</sup>

### 3. 동산담보의 정보화가 부진한 이유

위와 같이 제도상으로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출을 실시하는 은행들이나 전자식별표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중소기업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대출은행 입장에서도 동산담보물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용대출과 다름없이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담보관리를 위한 전자식별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값나가는 담보물에는 비교적 고가인 능동형 RFID 태그를 붙여야 하고, 공장 입구에는 고가의 고정식 RFID 리더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RFID 리더기를 비치하여야 함은 물론 실시간 정보수집을 위한 전용 통신회선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소액 대출을 얻어 쓰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거래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대출은행들은 전자식별표의 도입 자체를 기피할 공산이 크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주택담보부 가계대출<sup>38)</sup>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동산담보대출에 있어서도 담보물건의 조사, 감정평가수수료는 물론 담보물 현황

36) 각각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QR: quick response,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AIDC: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IoT: Internet of things.

37) 개인정보보호법 제15~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18조 등.

38) 이와 흡사한 사례가 주택담보부 가계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에서 은행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 2008.2.11.자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통보;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6. 선고 2010누35571 판결.

조사를 위한 전자식별표를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은행더러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V. 실효성 있는 방안의 모색

일단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면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래참여자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 증진과 제도의 이용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시행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제도화와 입법을 위해 투입한 비용<sup>39)</sup>은 재정의 낭비가 되고, 국민들에게 제도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에 따른 정보이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화에 드는 비용부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화 제고를 위한 적합한 기술이 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보관리 기술로는 앞서 소개한 RFID 외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바코드, QR코드가 있고 최근에는 NFC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담보관리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들은 새로 동산담보대출의 기회와 이익(availability)을 얻게 된 중소기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중소기업자들은 자금력이 좋은(deep pocket)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터에 담보대출 명목으로 금리를 깎아주면서 추가로 담보관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기피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동산담보관리가 당초 民生법안의 취지와 같이 공공성을 띤다면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sup>40)</sup> 이와 마찬가지로

39) 동산담보등기는 종이 장부가 없는(paperless)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므로 법원 등기소의 기존 시스템과는 독립된 컴퓨터·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일종의 공공 인프라로서 전자식별표를 이용한 담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담보대출을 얻어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자금출연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현재 이용 가능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AT)<sup>41)</sup>을 활용하여 담보관리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이다. 오늘날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NFC와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셀프-체크하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대출은행의 담당자나 담보관리 대행업자에게 동산담보의 현황을 통보하게 한다. 동산담보물의 현황조사는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업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할 수도 있다. 셀프-체크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sup>42)</sup> 더욱이 이러한 적정기술 기반의 동산담보관리는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에 동산담보 제도를 수출할 때에도 유용할 것이다.

셋째, 동산담보관리 전문사업자가 자기비용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적정기술 기반의 동산담보관리 서비스를 하는 데 큰 자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sup>43)</sup>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2~3년 이상의 업력(業歷)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정부가 글로벌 ICT 유망기술의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4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2014.6.22. 시행 예정>

41) 적정기술(AT)이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와 기술로써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예컨대 개도국에서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조명을 밝히거나, 무동력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불결한 우물물을 위생적인 물로 만드는 것 등이다.

42) 채무자(담보권설정자)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산담보물을 셀프-체크한 후 그 결과를 이동통신망으로 통보하면, 담보관리 대행업자가 이를 웹기반의 포털에서 종합 분석한 다음 대출은행 등을 위해 고부가 정보로 만들어 제공한다.

43) 한국산업은행은 아이디어 브릿지라는 자산운용사가 선정한 사업의 특허기술을 아예 사들였다가 해당 기업이 대출금리 수준의 기술사용료만 물고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sale and license-back)으로 특허기술의 가치평가에 관계없이 지적권을 활용한 대출을 해주었다. 한국경제, “산업은행 지식재산펀드 첫 투자 소니티어 IP 20억원에 사들여” 2013.3.12자.

도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은 도의시한 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할 기술의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였다.<sup>44)</sup>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동산담보대출이 중소기업, 특히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sup>45)</sup> 그리고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취급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 상품취급 금융회사 및 요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감정평가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은행권 공동의 체계적인 담보물관리 시스템 마련하고, 2015년 하반기로 예정된 중고기계 매매시장 개설<sup>46)</sup>에 즈음하여 감정평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동산담보물 사후관리상 어려움<sup>47)</sup> 해소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취급건수 추이에 맞춰 은행권 공동의 담보관리기관 설립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sup>48)</sup>하는 방안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일 동산담보에 관한

44) 주관 심사기관이 밝힌 “참여연구원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경험이 부족하여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업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클 경우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사업취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45) 그 동안 부동산담보 부족으로 은행대출에서 소외되었던 임차사업장 소유 영세 제조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공작기계 등 유형자산(2,721억원), 철강 및 골재 등 재고자산(1,965억원)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B2B 대출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채권(1,444억원)도 유력한 담보로 이용될 수 있었다. 금감원, 앞의 2013.8.26.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46) 2012년 4월 정부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에 국제적인 기계설비 토털 서비스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기계산업의 서비스화를 위하여 기계의 성능이나 품질을 감안한 담보거래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계산업 서비스화’ 본격 추진”, 2012.4.25. <<http://www.mke.go.kr>>.

47)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동산담보당기를 마친 채권은행이라 할지라도 일반채권자가 동산담보물에 대해 압류 및 강제신탁을 하는 것을 제때 알기 어렵고 자칫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산담보당기를 한 선순위의 채권자를 제치고 담보물건의 경락대금을 받아가는 것은 앞서 소개한 민원창구에서 앞선 번호표를 받은 사람을 제치고 새치기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법제도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없다면 오늘날 발달한 IT기술을 이용하여 출입문에서 민원인 개개인을 IoT와 DB 등으로 파악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DB구축이 지체될수록, 이미 DB없이 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온 터에 이중담보 제공, 리스물건과의 혼동, 고가 부품 빼돌리기 등 (-)정보가 속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식별표와 일대일로 결부된 DB구축<sup>49)</sup>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48) 금융감독원은 현재 2400여 업체에 걸쳐 있는 동산담보물 취급건수가 5만 건에 이를 때까지는 각 은행이 자체 관리하거나 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어 처리하도록 하고, 취급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서면 은행권 공동의 담보관리기관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감원, 앞의 보도자료.

49) 이동성이 큰 동산을 담보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같은 物的 편성주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물건에 센서를 부착하여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면 비록 비용 문제가 따르긴 해도 담보물건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IoT를 기반으로 DB를 구축하여 개별 동산담보물을 추적·관리하는 서비스를 은행 등 관련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굳이 담보물건에 한하지 않고 리스물건, 재고자산과 같은 모든 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소(e-Marketplace)를 운영하거나 유의미한 정보를 발굴하는 빅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됨에도 당장 스마트폰 앱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문제로 아이디어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 김철홍,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담보평가 현황 및 향후 과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중소기업중앙회관, 2013.3.14.
- 김필규,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 자산유동화법 개정 공청회 발표자료, 2010.8.19.
- 박현일, “지식재산권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지식재산연구」 제8권 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2013.9.
- \_\_\_\_\_,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규제현황 및 향후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12.
- 유기운 외, 「GIS 활용체계의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국가GIS지원연구 2003-62(건설교통부 용역보고서), 2003.
- 이상진, “[토론문] 금융권에서 동산·채권담보권 취급 실태 및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 한국법학원, 2013.8.
- 정기화, “알기쉬운 법경제학강의”, 신동아, 2003년 8월호(통권 527호).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7/29/200307290500014/200307290500014\\_6.html](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7/29/200307290500014/200307290500014_6.html)>
- Dasgupta, Partha. “Commentary: The Stern Review’s Economics of Climate Chang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 199, 2006,
- Nordhaus, William D. “Critical Assumptions in the Stern Review on Climate Change”, *SCIENCE* Vol.317, 13 July 2007, available online at  
 <[http://www.econ.yale.edu/~nordhaus/homepage/nordhaus\\_stern\\_science.pdf](http://www.econ.yale.edu/~nordhaus/homepage/nordhaus_stern_science.pdf)>.
- Posner, Richard A. *The Economics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Stern, Nicholas.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KoreanLII (온라인 영문판 한국법률정보사전) <<http://koreanlii.or.kr>>  
 한국경제, 신동아 등 인터넷 언론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법률신문 <<http://lawtimes.co.kr>> 이상 2014.2.28 최종 검색.

Abstract

Effective Administration of Movable Collateral  
in Terms of Information Cost

Park, Whon-II\*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ies, Receivables, etc. (the “Movable Collateral Act”) effective from June 2012 does not seem to facilitate Korean banks extending sufficient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based on movable collateral as expected. It’s because of the high information cost relating to such movable collateral. More than half of applications used to be rejected on account of lack of property specification, insufficient evidence of ownership and high volatility of assets. Furthermore, secured creditors are exposed to the risk to lose the collateral since they are not mandatorily informed of the timely notice of on-going attachment or foreclosure of the collateral initiated by a third party. Furthermore, reliable databases relating to machinery and inventories are not available for the checkup on relevant rights, price comparison, fair trading, etc.

It is necessary for the secured lenders to be equipped with plenty of information of collateral assets in view of various knowledge-based systems like registration, fair disclosure, credit rating of securities, SWOT analysis and benefit-cost analysis, etc. which would enhance the level of information of transactions concerned.

It is advisable to build up databases of movable collateral not by a single branch but by the whole banking system, taking advantage of the merit of electronic registration of movable collateral. Movable collateral databases could make it possible to monitor the status quo collateral assets, and to prevent double assignments for security or lease. Accumulated databases woul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online marketplace of

---

\*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 Advisor to the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Ph.D. in Law.

second-hand machinery.

In this context, it is desirable to adopt such appropriate system as RFID, QR code or NFC, in view of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businesses granting security, which would automatically generate a necessary database. But it is because of the high information cost that SMEs and lenders alike hesitate to adopt such sophisticated information technologies. Secured lenders were forced by the government to pay the home mortgage creation fee in place of borrowers.

So it is wise and reasonable to adopt such appropriate technology as low cost NFC. If the collateral administration for SMEs is conducive to the public interest,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care of it. It is proper and adequate for the lender banks to operate jointly the electronic collateral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benefit of SMEs under a certain level of total asset size.

Second, SMEs may conduct self-check of movable collateral with NFC function of smartphones, and forward the monitoring result as required by secured lenders on a continual basis. Otherwise, any specialized collateral administrator may, with financial support from secured lenders, provide them with necessary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movable collateral.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disclosed that it will step-by-step build up a systematic collateral administra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the banking industry. But the belated buildup of movable collateral databases could undermine the stability of movable collateral system.

The Author has suggested this kind of service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Big Data could be useful to manage and control movable assets, but failed to get a prime mover to initiate such service.

Keywords: institutionalization, information cost, movable collateral, electronic identification,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 of public notice, SWOT analysis, benefit-cost analysis(BCA).